



사회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확대와 사적연금제도

이태열 선임연구위원, 정원석 연구위원

- 국민의 복지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조달, 국민부담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최근 조세와 준조세 부담구조를 조정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임
 -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확정하였으며, 종합과세 역시 강화할 계획임
 - 건강보험료 부과 역시 부과 대상 소득을 확대하여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
- 특히 국민의 노후소득원인 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국민의 연금자산 형성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
 -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단계적 시행으로 공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적연금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됨
- 사적연금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국민의 노후소득 준비를 위한 사적연금 활용 유인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임
 - 사적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 될 경우 사적연금 가입·적립 장려를 위한 세제적격 연금의 체감세제 혜택이 일반 금융상품인 연금보험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하락하게 됨
 - 특히, 연금화된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일시금 수령 유인을 강화할 수 있음
- 사적연금 세제는 국민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제도의 근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세제 및 준조세 부담 논의 시 신중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임

1. 검토 배경



- 재원의 추가적인 조달, 국민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이유로 최근 조세와 준조세에 대한 부담구조를 조정하려는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
 - 최근 정부는 소득세의 명목 최고 세율을 42%로 2%p,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25%로 3%p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을 확정함
 -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2018년부터 부과 대상 소득을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하여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음
- 본고는 조세 및 준조세가 부과되는 소득 범위 확대가 사적연금과 같은 노후소득원 준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
 - 국민부담¹⁾은 기본적으로 세율이나 사회보험료율 변화에 영향을 받지만,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도 부과 대상 소득의 범위가 변경될 경우에 영향을 받음
 - 종합과세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확대는 요율보다는 징수 대상을 변경하여 국민부담을 증가시킬 것임
 - 본고는 사회보험료 등 준조세 부과 대상 소득의 범위가 사적연금소득 등으로 확대될 경우 개인의 은퇴 준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검토해보고자 함

2. 소득 종류별 조세 및 준조세 부과 기준



- 최근 종합과세소득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세율 인상과 관련 없이 조세와 준조세에 대한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(표 1) 참조
 - 정부는 담세능력이 큰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과 모든 소득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세한다는 원칙하에 종합과세를 강화하고 있음

1) 국민부담이란 조세와 국민연금,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성 준조세를 합한 것을 말함

- 2013년 종합과세 대상 금융 소득은 연간 4,000만 원에서 2,000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됨
- 대표적 준조세인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2018년부터 부과 대상 소득을 대폭 확대할 예정임²⁾
 - 피부양자 인정 요건을 연간 종합과세소득 3,400만 원으로 축소하고 2022년에는 2,000만 원까지 추가 축소할 예정임³⁾
 -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종합과세소득 중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기준을 현 7,200만 원 초과 소득에서 2,000만 원 초과 소득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임

〈표 1〉 종합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의 비교

구분	종합과세 대상	분리과세 대상
소득형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근로소득, 사업소득 등 · 이자 및 배당소득 연 2,000만 원 초과분 · 사적연금소득 연 1,200만 원 초과분 · 공적연금(02년 이후 납입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일용근로소득 · 이자·배당소득 연간합계액 2,000만 원 이하 · 사적연금소득 연간 1,200만 원 이하 · 퇴직소득, 양도소득 등 일시적 소득
국민건강보험료	부과 공적연금소득은 부분 부과 ¹⁾	미부과

주: 1) 현재는 20%만 부과되고 있으나 2022년까지 50%로 확대될 예정임

■ 조세와 준조세 부과 기준을 종합과세소득을 중심으로 통일하고자 하고 있으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부과 기준에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음(〈표 1〉 참조)

-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이중과세 문제로 2002년 이후 납입한 부분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연금 수령 시 부과함
 - 이는 연금납입액과 건강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2002년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조치임
- 반면,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연금 지급액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득세와는 차이가 있음
 - 건강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2002년 이전의 납부금에 대해서도 다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 부과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
 -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므로 이중과세 문제 등을 엄격히 따지기보다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더 내는 사회적 연대⁴⁾ 차원에서 부담을 부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

2) 은퇴 이후 연금 수령 시 실질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이기 때문에 준조세에 대한 논의는 국민건강보험료로 한정함
 3) 현재 연금소득, 금융소득, 근로 + 기타소득 중 각각 4,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분류하여 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음
 4)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최고 보험료와 최저 보험료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의 보험료 차등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

3.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준조세 부과



-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조세와 준조세 부과 기준 차이를 통해 볼 때 향후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의 부과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
 - 사적연금의 경우 주로 납입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적용되는 세제와 사회보험료 부과 기준에 차이가 있음(〈표 2〉 참조)
 - 퇴직연금의 경우 납입액 전체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가 이연되는 반면, 세제적격 개인연금 등 본인 납입 사적연금은 일정한 비율로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가입자 상당수는 소득공제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체감할 수 있음⁵⁾
 - 따라서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사적연금에 대한 연금소득세를 자체가 상당히 낮고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음
 - 또한, 사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공적연금소득과 같은 사회보험료 부담 문제도 제기되지 않고 있음
 - 단, 연간 1,2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적연금소득은 종합과세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부과 대상이 되고 있음

〈표 2〉 납입 주체별 사적연금에 대한 조세 및 준조세 부과

구분	퇴직연금	세제적격 연금저축 및 IRP ¹⁾
납입	고용주 100%	본인 100%
납입 시 세제	납입금 전체에 대해 과세 이연	납입금 전체에 대한 세액공제
수령 시 세제	퇴직소득세 종합소득세(한도 초과 시)	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(일시금 인출) 종합소득세(한도 초과 시)
사회보험료	미부과	미부과

주: 1) IRP나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DC형 퇴직연금과 같이 개인이 납입한 퇴직연금과 세제적격 개인연금을 의미함

5) 예를 들어, 한계세율 35.0%를 적용받는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 연금저축 납입 시 13.2%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해도 해당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21.8%의 소득세를 납부한 셈임

■ 공적연금소득과 같이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할 경우 사적연금소득도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

- 2016년 당시 야 3당(더불어민주당, 국민의당, 정의당)이 제안한 국민건강보험료 체제 개편(안)은 모두 소득 중심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제를 지향하면서 사적연금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의 부과를 제안한 바 있음
 - 단, 일시적 소득의 성격이 강한 퇴직일시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타당치 않다고 보거나 신중한 입장을 견지함

■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민간의 자발적인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크게 약화시킬 수 있음(〈표 3〉 참조)

- 연금저축 및 IRP 등 세제적격 연금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경우 금융상품인 세제비적격 연금보험과 비교해도 상대적인 혜택이 크게 감소함
 - 세액공제율 13.2%를 적용받아도 건강보험료 3.06%⁶⁾와 연금소득세 3.3~5.5%가 부과되면 체감세액공제율은 4.64~6.84%로 낮아져 약 절반 수준으로 감소함
 - 55~69세에 적용되는 연금소득세가 5.5%임을 감안하면 체감세제 혜택은 4.64%로 5% 미만인 반면, 장기간 유동성이 묶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

〈표 3〉 개인형 사적연금과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의 세후 상대적 세제 혜택 비교

구분	개인형 사적연금 ¹⁾	세제비적격 개인연금
세액공제율	13.2%	0%
원금 및 운용수익 과세율	(-)3.3~5.5%	0%
원금 및 운용수익 건강보험료율	(-)3.06%	0%
체감세제 혜택	4.64~6.84%	0%

주: 1) 본고에서 개인형 사적연금이란 세제적격 개인연금, IRP 등 개인이 납입하는 사적연금을 의미함

- 퇴직연금(사업주 납입)의 경우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선택할 경우 이연퇴직소득세(6~38%)의 30%를 감면⁷⁾해주나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경우 감면 규모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임

6)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보험료율의 1/2을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요율 6.12%의 1/2을 반영함

7)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연퇴직소득세의 30%를 감면하여 연금수령기간 동안 나누어 내도록 하고 있음

4. 시사점



- 최근 국민 부담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 변화 및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사적연금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
 - 연금체제가 성숙되어 갈수록 연금소득에 대한 국민 부담 문제가 중요해질 것이나, 사적연금의 경쟁력이 많은 부분 세제상의 혜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, 관련 환경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
 - 사회보험료에 적용되는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부담 원칙이나, 최근 진행되고 있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변경 등을 고려할 때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준조세 부과는 향후 정책적 이슈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

- 국민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도록 유도하는 사적연금제도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 변화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충분한 합의 도출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 - 사적연금제도는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작은 인센티브 변화에도 제도 정착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
 -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조세 또는 준조세 부담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퇴직일시금에 대한 극단적인 선호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
 - 사적연금은 공적연금과 달리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어 향후 불완전 소득공제 문제도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준조세 부담 문제까지 제기될 경우 제도의 기본 취지가 크게 약화될 수 있을 것임

kiri